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7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3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4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4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4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유동수 예, 박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도 한 15분에 시작하는데 요.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무래도 국민과 한 약속이고 10시에 시작이 됐으면, 최소한 5분 정도면 몰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15분 늦는 것은, 제가 아직 3년 차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관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박상혁 간사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웃음소리)

제 의도는 아니지만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많은 다선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위원장님께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제가 보니까 오늘만은 박상혁 간사님이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나.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수 예, 서일준 위원님.

○박상혁 위원 제가 잠깐.....

○서일준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박상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박민규 위원님 질책을 잘 이어받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기억나는 분이, 송언석 위원님 기억하실 텐데 제가 초선 때 국회의원 중에 김희국 의원님, 김희국 의원님은 질의할 때도 정말 1초를 안 틀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질의할 때도 딱 7분이면 7분,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1분이면 1분. 그때 제가 오버하는 시간은 다른 동료 위원님의 것을 훔치는 거다라는 말씀도 그때 많이 주셔서 참 기억에 남는데 앞으로

는 우리가 정시에, 약속한 시간에 시작하고 혹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다면 함께, 전체 회의든 소위든 잘 공지해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서일준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서일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박 간사님이 대신해 주셔서 저희도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위원이 최근 제기된 총리실의 야당 의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총리실 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해당 과장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총리실 차원의 지시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이 총리실 과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출석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오늘 박상혁 간사님이 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안 했다 이런 질책이 많으셔 가지고……

○박대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박대출 위원 회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서일준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시간 지키려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40만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직간접적으로 최대 현안이고 최대 민생 현안입니다. 어제오늘 이틀간 보도됐듯이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단일종목 ETF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업계의 요청이 아니었다 그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또 재발방지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은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협의 단계부터 위원장님 적극 합심을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당 간사들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20분)

○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관하여 상정합니다.

박상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우리가 항상 법안심사 결과를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왔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서일준 간사님이 보여 주셔서 오늘은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상혁 의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대안 1건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훈식 의원, 강명구 의원, 정태호 의원, 천준호 의원, 김현정 의원, 이인영 의원, 이강일 의원, 박상혁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행매수를 통해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또는 기존에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매수 등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한 수 이상을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상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는 법안심사제2소위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2소위에서도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은석 위원님과 이강일 위원님, 양당 간사님들은 1소위·2소위 법률안 논의에 전부 다 참석하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박상혁·서일준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이번에 의결할 자본시장·금융업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 인수 시 지배권의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도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목적은 기업의 지배권이 변경될 때 일반주주도 기존 지배주주와 똑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개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 플러스 1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공개매수로 인수가 적은 자금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관행도 바꾸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일반주주가 프리미엄을 공유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넣기 보다는 사실은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라도 이 부분을 여지를 줘야 되는데 아예 시행령조차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하게 시행령에서라도 위임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라도 보완책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공개매수를 했는데도 청약률이 낮아 가지고 50 플러스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개매수가 실패했을 때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조항 자체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자들은 청약률을 낮추는 저가매수 전략을 펼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완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을 줄여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유인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할 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의무공유매수제는 허울뿐이고 오히려 그 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령에 두지도 않고 50 플러스 1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금융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일반주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의하셔서 안들을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항상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의 이런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제가 제1소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상법에 나와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그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회의와 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 특히 경영권 방어에 관한 적절한 보호 장치도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굉장히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사모펀드 등에 비해서 자금조달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M&A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 등에 비해서 해외의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주가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권의 분쟁이 있는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진행되면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서 벗어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 와중에 단타 매수와 여러 가지 작전주라고 그럴까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접촉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업계 그리고 관련자분들은 한마디로 ‘여기서 아직은 검토가 더 필요한 설익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정도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일단은 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하자라는 방식보다는 충분히 온갖 상황과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등에 대해서 논의한 뒤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법안을 막자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이렇게 설익은 법안을 일단 해 보고 시장의 반응 보고.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가자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는 말을 드리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강행하신다면 기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연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형연입니다.

제가 법안1소위에 뒤늦게 참여했을 때의 논의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100% 의무매수를 주장하셨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50% 플러스 1주 이상, 구체적인 의무매수 수량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소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양당 간의 논의 상황을 다 지켜봤고요. 그 과정에서 100% 의무매수를 하는 안은 양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50% 플러스 1 해서 국민의힘 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양당 간에 사실상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는 헌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50% 플러스 1 이상, 구체적인 의무매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 정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려면 의무매수량을 정하는 기준이라도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데 법률안 초안에는 의무매수량을 정하는 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 차라리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경과를 거쳐서 시행령에 백지 위임하는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소위에서 합의가 의결이 된 것입니다.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한창민 위원님께서 그런 자세한 경과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또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리스크 내지는 소액주주의 보호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을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또 양당 간에 합의를 해 오셔서 오늘 전체위에 올렸기 때문에, 한창민 위원님이 소위 위원은 아니신데 한창민 위원님께서 금융위원장께 말씀하신 부분들을 금융위원장은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잘 반영해서 한창민 위원님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만 의견을 남기고……

○위원장 유동수 1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창민 위원 지금 소위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형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에 근거 조항 자체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한다는지 저는 좀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량매수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50 플러스 1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 플러스 1이 매수 자체가 안 됐을 경우에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조항도 아예 삭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부분도 아예 없어지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까지 표결을 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기록에 남고

다음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속기록에 잘 기록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50% 플러스 1주가 공개매수 기간에 안 되는 경우도, 소액주주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창민 위원님의 지적이나 우려하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법을 시행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장님이 잘 살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다시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권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저도 기권입니다.

○한창민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유동수 조정훈 위원님과 박홍배 위원님이 기권을 해 주셨고 한창민 위원님도 기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이의는 있는데 기권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장으로부터 법률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존경하는 정무위원회의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공개매수를 재도입하는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과정

에서 지배주주만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주주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내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함께 살펴 위원님들께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이 법 집행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안 심의·의결에 애써 주신 박상혁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덕원 금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언석 위원 위원장님, 끝난 거예요?

○위원장 유동수 예.

○송언석 위원 중요한 게 아직 남아 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법안은 통과가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수 3분 드릴까요?

○송언석 위원 예.

○위원장 유동수 3분.

○송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렇게 소위에서 양당 간에 합의를 해서 왔다는 식의 언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에는 양당뿐만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함께 소위 멤버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양당의 합의가 아니라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다 수합을 해서 합의가 된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절치 않을까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분, 청와대가 1월 13일인가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금융투자협회가 취합한 증권업계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에도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고위험상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된 걸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강력하게 주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사실은 지금 확신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오롯이 책임지고 잘못을 책임질 그런 사안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불러서 전후 사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께 알려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무위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금융위원장께서는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고 했고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했지만 그 평가를 했다는 어떠한 정황도 없고 자료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을 볼 때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50조라는 얘기도 나오고 40조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손실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더 국감 중인 채택에, 아마 지금 양당 간사들께서 국감 일정과 그다음에 중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박상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수렴해서 의견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도를 봤는데, 보면 연초에 통상적으로 이런 업계와 정부 측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화들을 수시로 했었고 말 그대로 그런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관련된 회의였던 것으로 보도에도 보여지는데 지금 제목이 조금 그런 부분을 잘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보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잘 담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양당 간사님들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께서 아까 의사일정 관련해서 제 발언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위원장 처음이라서 좀 실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형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준현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김형연 민병덕 박대출 박민규 박상혁 박성훈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유동수 이강일 전현희 조정훈 최은석
한민수 한창민

○청가 위원(2인)

박준태 이소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기획조정관 손주형
자본시장국장 변제호